

[긴급]시설공사 2인이상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음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중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남신초 외 1교(음성중) 방수공사	남신초등학교 음성중학교	방수공사 1식 (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84,560,000	18,456,000	203,016,000	0	203,016,000	198,473,000

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2. 10:00 ~ 2026. 9. 28.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8.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견적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제출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재견적의 경우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신규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령」 제9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992]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음성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중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음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 라. 계약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이상규(043-871-5097)】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0,049,176	2,190,327	2,894,035	287,808	1,401,322	3,275,684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190,327	2,894,035	287,808	1,401,322

-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3,275,684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4. 기타 사후정산 등

-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협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협약서를 음성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협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use.go.kr>) 행정정보/재무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재무팀(☎871-5091, 담당자 김형준),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871-5097, 담당자 이상규)
-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페인트
- 연락처: 010-○○○○-○○○○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소재지: 충북 청주시 ○○○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대표자: ○○○ (서명)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_____ (서명)

감독관: _____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점검표				
○ 기관명 : _____		점검일자 : 20__년 __월 __일		
1.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 계획에 따른 이행 (실시시기, 자료 등에 따라 평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2.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업무 증설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 등 업무 시) - 도급 등 업무의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도급사업 업무 증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관리감독자 -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 작업장 정리정돈 등				
○안전관리자(위탁 시 안전관리 전문기관)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정격품 선정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분석, 재발방지 보좌, 지도조언 등				
○보건관리자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정격품 선정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배치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분석, 재발방지 보좌, 지도조언 등				
○산업보건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전환 등 -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 건강증진에 위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등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사)교육 실시 확인

안전·보건교육 일지						결 자	단 장	관 리 감 독 자
교육일시						직급/작성자		
교육과정	정기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다. 기타 () 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1시간, 8시간) 라. 특별교육 () 교육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 미 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 실시자 수							
강사(관리감독자) 및 장소	소속	직책	강사	교육 실시 장소				
교육제목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집체교육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NO	부서명	성명	서명	NO	부서명	성명	서명	
1				6				
2				7				
3				8				
4				9				
5				10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위험성 평가표(예시)

공정명	평가일시	위험성평가				평가자 (리더 및 팀원)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현재상 태 및 조치	현재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추정)	개선 예정일	담당자	비고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평가표 【작성 사례】

공정명		위험성평가										평가자 (리더(담당자))	
평가일시		유해위험요인		관한근거		현재위험성		현재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작업 내용	분류	원인	유해위험 요인	법적기준	현재상태 및 조치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추정)	개선 예정일	담당자	비고	
원자로 검고	기계적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기계적 요인	기계(밸브) 외 배치 불량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7		홍길동		
원자로 검고	기계적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미동	3	2 (높음)	핵물위험 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 차단이 불 가능	2018-02-28		홍길동		
원자로 검고	작업환경 요인	중물위험 부	핵물위험으로 부상할지 불확실성이 있어 비상· 상비한 안전차단이 불가 하고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 143조 (비상장치 장치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수료번호 : 안전협회2018-S02-A502-				
교육 실시 확인서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_____				
○ 대표자 : _____				
2. 교육의 개요				
교육의 종류	교육일자	교육시간 (합계시간)	교육내용	교육이수자(명)
관리감독자교육	2018.08.23 - 2018.08.24	16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제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1조에 따라 교육이수를 위해 같이 확인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붙임2】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여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음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